

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1. 21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1. 21(의안 제5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62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(2002.2.2)

2. 제안이유

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게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징수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적용범위 :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(안 제2조)
- 과태료 징수결정 및 수납 등 : 사천시세조례 제5조 준용(안 제3조)
-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(안 제4조)

4. 법적근거

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금까지는 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왔으나, 법령 해석상 징수에 대하여서만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, 법령 체계상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